

#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홍식

## 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김호경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3년 11월 16일

나.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7일

3. 제안이유

충청북도의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복지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문화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사용하는 용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정원문화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정원도시의 조성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정원문화의 기반 마련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도민참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4조)

- 아. 정원박람회 개최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 안 제16조)

## 5. 검토내용

###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충청북도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근거와 규정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제정이 정당하고,
-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없어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함.
- 조례 제정을 통해 수반되는 예산은 연 4,000만원 가량으로 정원 식물의 보존·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을 지원하는데 요구되는 추계사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는 없음.
- 조문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
  - 안 제3조는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는 도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 여건 조성 등 정원문화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5조는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지방정원, 실내외 정원, 지능형 정원 등 정원도시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6조는 도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도민 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정원 문화의 기반 마련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7조는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8조는 민간정원의 개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0조는 도민 및 공동체의 참여 협조를 통해 생활권 중심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활동을 장려하는 등 정원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1조는 도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5조는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원박람회의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7조는 정원문화의 진흥·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법인·단체 등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

○ 조례안 예고( '23. 11. 21. ~ 11. 27.)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본 조례는 '23년 11월 기준 13개 시·도에서 제정·시행 중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 제정안은 총 1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상의 내용과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 되는 내용 없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 6. 검토의견

「충청북도 정원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충청북도 도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원문화 조성에 기여하며,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